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2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4.

발 의 자 : 정을호 · 조계원 · 최혁진
차지호 · 문정복 · 임호선
박수현 · 이기현 · 강준현
신영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 · 전문성 ·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,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, 금품 · 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, 전문위원회 위원, 특별위원회 위원, 연구전문위원,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

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5장 및 제6장 신설 등).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위원은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.

제5장(제25조 및 제26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보칙

제25조(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) ① 위원, 전문위원회 위원, 특별위원회 위원, 연구전문위원,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② 위원, 전문위원회 위원, 특별위원회 위원, 연구전문위원,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① 위원, 전문위원회 위원, 특별위원회 위원, 연구전문위원,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

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사무처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장(제27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벌칙

제27조(벌칙)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겸직금지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9조(겸직금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위원은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5장 보칙</u>
<u><신 설></u>	<u>제25조(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)</u> <u>① 위원, 전문위원회 위원, 특별위원회 위원, 연구전문위원,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.</u> <u>② 위원, 전문위원회 위원, 특별위원회 위원, 연구전문위원,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① 위원, 전문위원회 위원, 특별위원회 위원, 연구전문위</u>

<u><신 설></u>	<u>원,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사무처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제6장 벌칙</u> <u>제27조(벌칙)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